

서울고등법원 2020. 7. 17 선고 2020나2005431(본소), 2020나2005448(반소) 판결
[청구이의 · 매매대금반환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0. 7. 17 선고 2020나2005431(본소), 2020나2005448(반소) 판결
의정부지방법원 2020. 1. 15 선고 2017가합57370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형, 심승현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원, 장원선

변론 종결2020. 6. 5.

판결 선고2020. 7. 17.

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. 1. 15. 선고 2017가합57370(본소), 2019가합59080(반소)
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의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. 9. 4.자 2017차1812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2억 1,000만 원 및 그중 5,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. 8. 7.부터, 4,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. 8. 16.부터, 1억 2,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. 10. 10.부터 각 제1심판결 선고일(2020. 1. 15.)까지는 연 5%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.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,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,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 대여금 588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7. 9. 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으로써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, 피고의 반소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

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[고쳐 쓰는 부분]

○ 제1심판결문 4면 중 12~13행의 '의정부지방법원'을 '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'으로, 14행의 '2017. 9. 29.부터'를 '2017. 9. 8.부터'로 각 고쳐 쓰고, 17행의 [인정 근거]란에 '을 제17호증'을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5면 중 16행의 'B'을 '피고'로, 17행의 '을 제20호증'을 '을 제22호증'으로, 19행의 'J'을 'T'으로 각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문 6면 중 7행의 '10,075,250,000원'을 '1,075,250,000원'으로, 15~16행의 '피고인 남편인'을 '피고의 남편인'으로 각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문 7면 9~10행의 ' 의정부지방법원 2017. 9. 4.자 2017차1812호 지급명령(이하 '이 사건 지급명령'이라 한다)'을 '이 사건 지급명령'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문 8면 8행의 '임야'를 '주택'으로, 아래에서 1~2행의 '원고가 반환을 구하는'을 '피고가 반환을 구하는'으로 각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문 9면 10행의 '을 제5호증'을 '갑 제5호증'으로 고쳐 쓴다.

[추가로 판단하는 부분]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제1심 법원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포기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, 피고 등 부부가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으로 1,004,000,000원(수표로 530,000,000원 지급,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기존 대출금채무 474,000,000원 인수)을 지급하고, 이 사건 요양병원 공사대금 등(피고의 대출금 채무인수 포함)으로 총 1,128,000,000원(= 723,000,000원 + 203,000,000원 + 담보대출금 200,000,000원 + K 2,000,000원)을 지출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 공사비로 641,652,000원을 지출하였을 뿐인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,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잘못된 것이다. 즉, ① 피고 등 부부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공사비 중 2014. 4. 30. 및 2014. 5. 26. L 계좌로 이체된 44,000,000원은 피고가 M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(을 제21호증의 28), 원고에게 지급한 가계수표 203,000,000원 중

절반은 피고가 수표할인을 부탁하여 원고가 업체를 소개시켜준 것으로서 위 수표금 중 약 1억 원이 피고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 등 부부는 원고에게 공사비로 396,000,000원 정도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,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도 474,000,000원의 채무인수 부분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 등 부부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합계 870,000,000원을 투자한 것이다.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중 286,000,000원을 부담하고, 공사비로 1,075,250,000원(갑 제10호증)을 지출하여 합계 1,361,250,000원을 투자하였다. 이와 같이 원고가 더 많이 투자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등 부부는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당시 서로가 얼마씩 투자하였는지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워 비슷하게 투자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. ② 이후 피고 등 부부는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원고를 찾아와 이 사건 포기각서를 찢었으나 원고는 위 포기각서의 작성으로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 등 부부에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위와 같은 공사대금 지출 내역과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,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무렵에는 원고와 피고 등 부부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서로의 투자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 등 부부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588,000,000원의 채권과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 520,000,000원의 채권을 쉽게 포기하고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주기로 정산한다는 것은 거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,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한창훈

판사박은영

판사김민아